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

켜 공영도매시장마다 거래 규모와 유통 여건이 다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을 수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유통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농안법의 개정이 지연될 때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가 권한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생산자·소비자·유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